감 정 평 가 서

APPRAISAL REPORT

감정의뢰처	광주문화신용협동조합
건 명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14-17 소재 "토지"
감정평가서번호	DD254-102303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광주·전남지사
61504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523, 2층(용산동)
TEL : (062)385-3100 | FAX : (062)385-3105 | www.idab.co.kr

(토지)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 정 평 가 사 제 미 라 (인)

(주)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광주·전남지사 지 사 장 추 민 수 (인)

감 정 평 가 액	오십이억구천칠백이십일만사천원정(₩5,297,214,000.-)			
의 뢰 인	광주문화신용협동조합이사장	감정평가목적	일반거래(시가참고용)	
제 출 처	광주문화신용협동조합	기 준 가 치	시장가치	
소 유 자 (대상업체명)	광주문화신용협동조합	감정평가조건	-	
목록표시근거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토지대장등본	기 준 시 점	조 사 기 간	작 성 일
(기타참고사항)	-	2025.09.30.	2025.10.23. ~2025.10.28.	2025.10.28.

감정평가내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원/㎡)	금 액(원)
토지	881.4	토지	881.4	6,010,000	5,297,214,000
합 계					₩5,297,214,000.-
		- 이 하 여 백 -			

심사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 사 자 : 감 정 평 가 사 (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I.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소재 "남양산역" 서측 인근 일반상업지역내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광주문화신용협동조합의 일반거래(시가참고용) 목적의 감정평가임.

II. 감정평가의 근거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관계법령의 규정과 제반 감정평가이론 및 기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III. 기준가치, 기준시점 및 실지조사 실시기간

1.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2.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 단서에 의거 기준시점은 귀 의뢰인이 제시한 2025.09.30.을 기준하였음.

3.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에 의거 2025.10.27. 일자로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에 대한 개별적인 상황을 조사·확인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Ⅳ.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감정평가액의 산출의견

1. 부동산의 감정평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장가치의 도출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함.
   ①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원가법"
   ②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
   ③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
   ④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수익환원법"

2. 본건 토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4조에 의거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였음.

3. 대상물건의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별로 정한 주된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 하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본건 토지는 시장성을 지니는 부동산으로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하였음.

Ⅴ. 감정평가조건

해당사항 없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VI. 그 밖의 사항

1. 본건은 일반거래(시가참고용) 목적의 감정평가건으로서, 일반거래(시가참고용) 목적 외의 타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2. 본건 토지의 공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지적도)와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물적 동일성이 인정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I. 대상물건 개요

일련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교통	형상 지세	개별공시지가 (2025년, 원/㎡)
1	범어리 2714-17	대	881.4	일반상업 상업나지	중로각지	정방형 평지	3,122,000

※ 평가대상 토지의 형상, 이용상황 및 공법상 제한사항 등에 대한 상세내역은 토지감정평가요항표 참조.

II.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1. 산출개요

본건 토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14조에 의거 인근지역 내에 소재하는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공시기준일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로 시점수정하고, 위치, 부근지대 상황 및 성숙도, 접근성, 획지의 형태 및 이용상황, 도로 및 교통상황, 공법상 제한상태, 일반수요와 유용성 등의 제반 가치형성요인과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2. 비교표준지 선정

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공시기준일 : 2025.01.01.]

일련번호	소재지	면적(㎡)	지목	용도지역	형상	지리적 위치	공시지가(원/㎡)
			이용상황	도로교통	지세		
48330-1362(A)	범어리 2715-3	999.8	대	일반상업	세장형	남양산역 서측 인근	3,122,000
			상업용	중로각지	평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나. 선정사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평가대상토지와 용도지역 · 이용상황 ·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하여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음.

3. 시점수정(지가변동률)

- 대상기간 : 2025.01.01. ~ 2025.09.30.
- 대상지역 : 경상남도 양산시
- 용도지역 : 상업지역
- 지가변동내역

기 간	지가변동률 (시점수정치)	비 고
2025.01.01. ~ 2025.09.30.	0.255%	9월까지 누계
누 계	0.255% (1.00255)	(1+0.00255)

시점수정은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였음.

4. 지역요인 비교

본건과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대등함.(1.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5. 개별요인 비교

- 개별요인 비교항목 (상업지대)

조건	항 목	세 항 목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접근 조건	상업지역중심 및 교통시설과의 편의성	상업지역중심과의 접근성, 인근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환경 조건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인근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자연환경	지반, 지질 등
획지 조건	면적, 접면, 너비, 깊이, 형상 등	면적,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삼각지, 자루형 획지 등
	방위, 고저 등	방위, 고저, 경사지
	접면도로 상태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용적제한, 고도제한, 기타 규제(입체이용제한 등)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 개별요인 비교치

일련번호	비교표준지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계
1	(A)범어리 2715-3	1.00	1.00	1.00	0.99	1.00	1.00	0.990
	본건은 비교표준지A와 비교하여 획지조건(각지 등)에서 열세함.							

6. 그 밖의 요인 보정

가. 그 밖의 요인 보정의 근거 및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 [610-1.5.2.5],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대법원 판례 등에서 인정되는 점을 근거로 하여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평가사례, 거래사례와 균형을 유지하고, 인근지역의 지가수준을 적정히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이 필요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나. 평가사례 및 거래사례

(1) 평가사례

[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용도지역 이용상황	토지감정평가액 (원)	토지단가 (원/㎡)	평가목적 기준시점
1	범어리 2715-37	대	2,483.5	일반상업 상업용	14,876,165,000	5,990,000	시가참고 2024.07.31
2	범어리 2715-4	대	1,017.2	일반상업 상업용	6,001,480,000	5,900,000	담보 2024.02.01
3	범어리 2715-1	대	1,616.3	일반상업 상업용	11,152,470,000	6,900,000	담보 2025.05.13
4	범어리 2715-34	대	929	일반상업 상업용	5,508,970,000	5,930,000	담보 2025.04.15

(2) 거래사례

[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호	소재지	토지 / 건물	면적 (㎡)	용도지역 / 이용상황	거래금액 (원)	토지단가 (원/㎡)	거래시점 / 사용승인일
1	범어리 2715-4	대	1,017.2	일반상업	9,500,000,000	6,035,000	2024.03.29
		건물	3,077.49	상업용			2013.01.29
	건물가액 산정 : 3,077.49 × 1,092,000(1,400,000×39/50) = 3,360,619,080원 토지거래단가 산정 : { 9,500,000,000 - 3,360,619,080 = 6,139,380,920 } ÷ 1,017.2 = 6,035,000원/㎡						
2	범어리 2711-29	대	431.8	일반상업	3,900,000,000	4,365,000	2025.02.25
		건물	1,399.34	상업용			2014.12.24
	건물가액 산정 : 1,399.34 × 1,440,000(1,800,000×40/50) = 2,015,049,600원 토지거래단가 산정 : { 3,900,000,000 - 2,015,049,600 = 1,884,950,400 } ÷ 431.8 = 4,365,000원/㎡						

토지와 건물이 일괄 거래된 거래사례는 거래금액에서 사례건물의 구조, 용도, 사용승인일 등을 고려하여 거래시점 당시 건물가액을 추정하여 공제한 후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한 토지단가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다. 기타 참고자료

(1) 본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 : 2025.01.01.]

일련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	개별공시지가 (원/㎡)	금액 (원)
1	범어리 2714-17	대	881.4	3,122,000	2,751,730,800

(2) 평가대상 지역의 경매통계분석

[출처 : www.ggi.co.kr]

소재지	기간	구분	낙찰가율 (%)	낙찰건수	비고
경남 양산시	최근1년	대지	45.79	10	총 50건 중

라.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산정

(1) 산식

$$\frac{\text{평가사례기준 표준지가액}}{\text{표준지의 기준시점 현재가액}} = \frac{\text{평가사례}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 \times \text{개별요인}}{\text{공시지가} \times \text{시점수정}}$$

(2) 평가사례의 채택

평가사례 중에서 용도지역, 이용상황, 감정평가 목적 등에서 가장 유사성이 있는 평가사례 (1)를 선택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3) 평가사례를 기준한 표준지가액

비교 표준지	사례토지 기호	사례가격 (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정단가 (원/㎡)
A	1	5,990,000	1.00769	1.00	1.010	6,096,424

㉠ 시점수정(지가변동률)

기 호	기 간	사례지역 용도지역	지가변동률 (시점수정치)
평가사례 #1	2024.07.31. ~ 2025.09.30.	경상남도 양산시 상업지역	0.769% (1.00769)

㉡ 지역요인

표준지와 평가사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므로 지역요인은 대등함.(1.00)

㉢ 개별요인

비교 표준지	사례토지 기호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계
A	1	1.00	1.00	1.00	1.01	1.00	1.00	1.010
	비교표준지A는 평가사례(1)과 비교하여 획지조건(각지 등)에서 우세함.							

(4) 표준지의 기준시점 현재가액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산정단가 (원/㎡)
A	3,122,000	1.00255	3,129,961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5) 평가사례 기준 표준지가액과 표준지의 기준시점 현재가액과의 보정치

비교 표준지	평가사례 기준 표준지가액(원/㎡)	표준지의 기준시점 현재가액(원/㎡)	산출 보정치
A	6,096,424	3,129,961	1.947

(6)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상기와 같이 평가사례를 기준한 표준지가액과 표준지의 기준시점을 기준한 현재가액 간에 일정한 격차가 발생하며, 인근지역 내 유사부동산의 평가사례, 거래사례, 현지조사 가격수준, 기타 참고자료를 분석하고 본건 감정평가 목적 등을 종합 참작할 때 아래와 같이 보정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비교표준지 일련번호	비교표준지	사례토지 기호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적용 대상토지 (일련번호)
48330-1362(A)	범어리 2715-3	평가사례 #1	1.94	1

7. 토지단가의 결정

일련번호	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밖의 요인	산정단가 (원/㎡)	적용단가 (원/㎡)
1	(A)3,122,000	1.00255	1.00	0.990	1.94	6,011,403	6,010,000

8.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일련번호	면적 (㎡)	적용단가 (원/㎡)	시산가액 (원)	비고
1	881.4	6,010,000	5,297,214,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III.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1. 산출개요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2. 비교 거래사례의 선정

가. 거래사례

[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례 기호	소재지	토지 건물	면적 (㎡)	용도지역 이용상황	거래금액 (원)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1	범어리 2715-4	대	1,017.2	일반상업	9,500,000,000	2024.03.29
		건물	3,077.49	상업용		2013.01.29

나. 선정사유

본건과 용도지역, 이용상황, 규모, 입지조건 등이 유사하여, 거래사례(1)를 비교 사례자료로 채택함.

3. 비교 거래사례의 토지단가 산정

가. 산정의견

건축물신축단가표 및 기타 제반자료를 참고하여 비교 거래사례의 건물가액을 산정 후 전체 거래금액에서 산정된 건물가액을 차감하여 비교 거래사례의 토지가액을 산정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나. 건물가액 산정

사례 기호	연면적 (㎡)	재조달원가 (원/㎡)	잔가율	적용단가 (원/㎡)	건물가액 (원)
1	3,077.49	1,400,000	39/50	1,092,000	3,360,619,080

다. 토지가액 산정

사례 기호	(A)거래금액 (원)	(B)건물가액 (원)	(A) - (B) = 토지가액 (원)
1	9,500,000,000	3,360,619,080	6,139,380,920

라. 비교 거래사례의 토지단가

사례 기호	면적 (㎡)	토지가액 (원)	토지단가 (원/㎡)	비고
1	1,017.2	6,139,380,920	6,035,000	

4. 토지단가의 산정

일련번호	사례기호	비교사례 단가(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정단가 (원/㎡)
1	1	6,035,000	1.00	1.01299	1.00	1.000	6,110,000

㉠ 사정보정

비교 거래사례에 거래과정의 특별한 사정이나 개별적인 동기 등은 발견되지 않음.(1.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시점수정(지가변동률)

사례기호	기 간	사례지역 용도지역	지가변동률 (시점수정치)
거래사례 #1	2024.03.29. ~ 2025.09.30.	경상남도 양산시 상업지역	1.299% (1.01299)

㉢ 지역요인

대상토지와 비교 거래사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므로 지역요인은 대등함.(1.00)

㉣ 개별요인

일련번호	사례기호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계
1	1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본건은 거래사례(1)과 비교하여 개별요인 대등함.							

5.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일련번호	면적 (㎡)	산정단가 (원/㎡)	시산가액 (원)	비고
1	881.4	6,110,000	5,385,354,000	

Ⅳ. 합리성 검토 및 감정평가액의 결정

1. 각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

평가방법	시산가액 (원)	비 고
공시지가기준법	5,297,214,000	
거래사례비교법	5,385,354,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2. 시산가액의 합리성 검토

대상물건의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별로 정한 주된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 하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였음.

대상부동산의 각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검토하여 보면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유사하게 산정되고 있으므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됨.

3. 감정평가액의 결정

본건은 일반거래(시가참고용) 목적으로서 수요성, 환가성, 공시지가와 인근지역의 현지조사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음.

감정평가액(원)	5,297,214,000

(토지)감정평가 명세표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용 도	용도지역 구 조	면 적(㎡)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가(원/㎡)	금액(원)	
1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14-17	대	일반상업지역	881.4	881.4	6,010,000	5,297,214,000	
	합 계							₩5,297,214,000.-	
				- 이 하 여 백 -					

대일감정원
Daeil Appraisal Board

토 지 감 정 평 가 요 항 표

I. 입 지 조 건

1. 지리적 위치

본건은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부산 지하철 2호선 "남양산역" 서측 인근에 위치함.

2. 부근상황

본건 부근은 근린생활시설,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상가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3.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 차량의 접근 및 진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지하철역(부산 지하철 2호선 남양산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4. 기타사항

해당사항 없음.

II. 토 지 상 황

1. 지세 및 형상

본건은 인접도로 및 인접토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정방형의 토지임.

토 지 감 정 평 가 요 항 표

2. 이용상황

본건은 상업나지임.

3. 접면도로 상황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20m 내외, 북서측으로 노폭 약 10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각각 접해있음.

4. 토지이용계획 및 공법상제한사항

일반상업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소로1류(폭 10m~12m)(접합),중로1류(폭 20m~25m)(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임.

5. 제시목록외의 물건

해당사항 없음.

6.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7. 기타사항

해당사항 없음.

광 역 위 치 도

기호 : ( )

소 재 지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14-17번지



대일감정원
Daeil Appraisal Board

상 세 위 치 도

기호 : (　　)

소 재 지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14-17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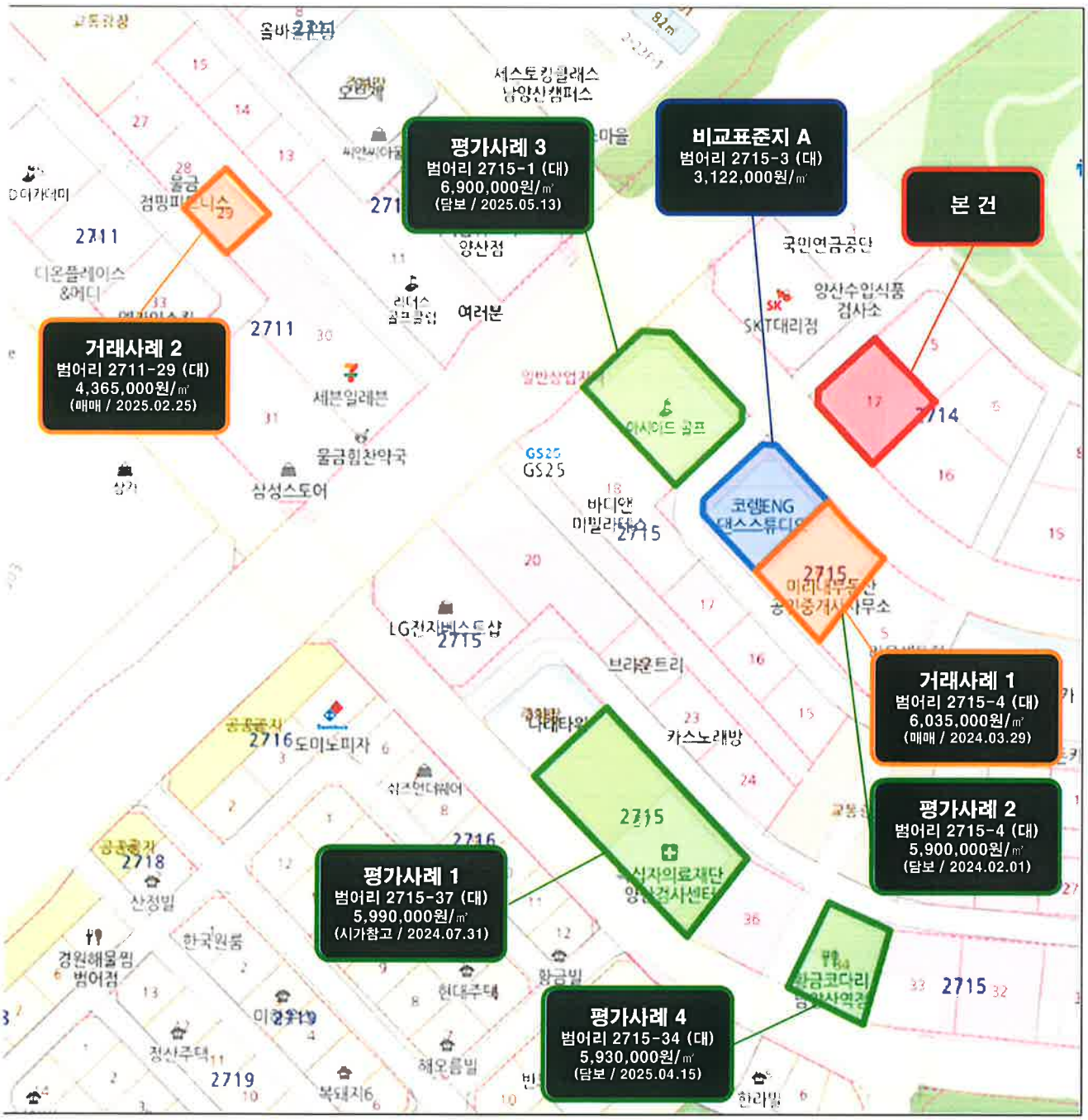

대일감정원
Daeil Appraisal Board

지 적 개 황 도

기호 : ( )

N

S

S : 1 /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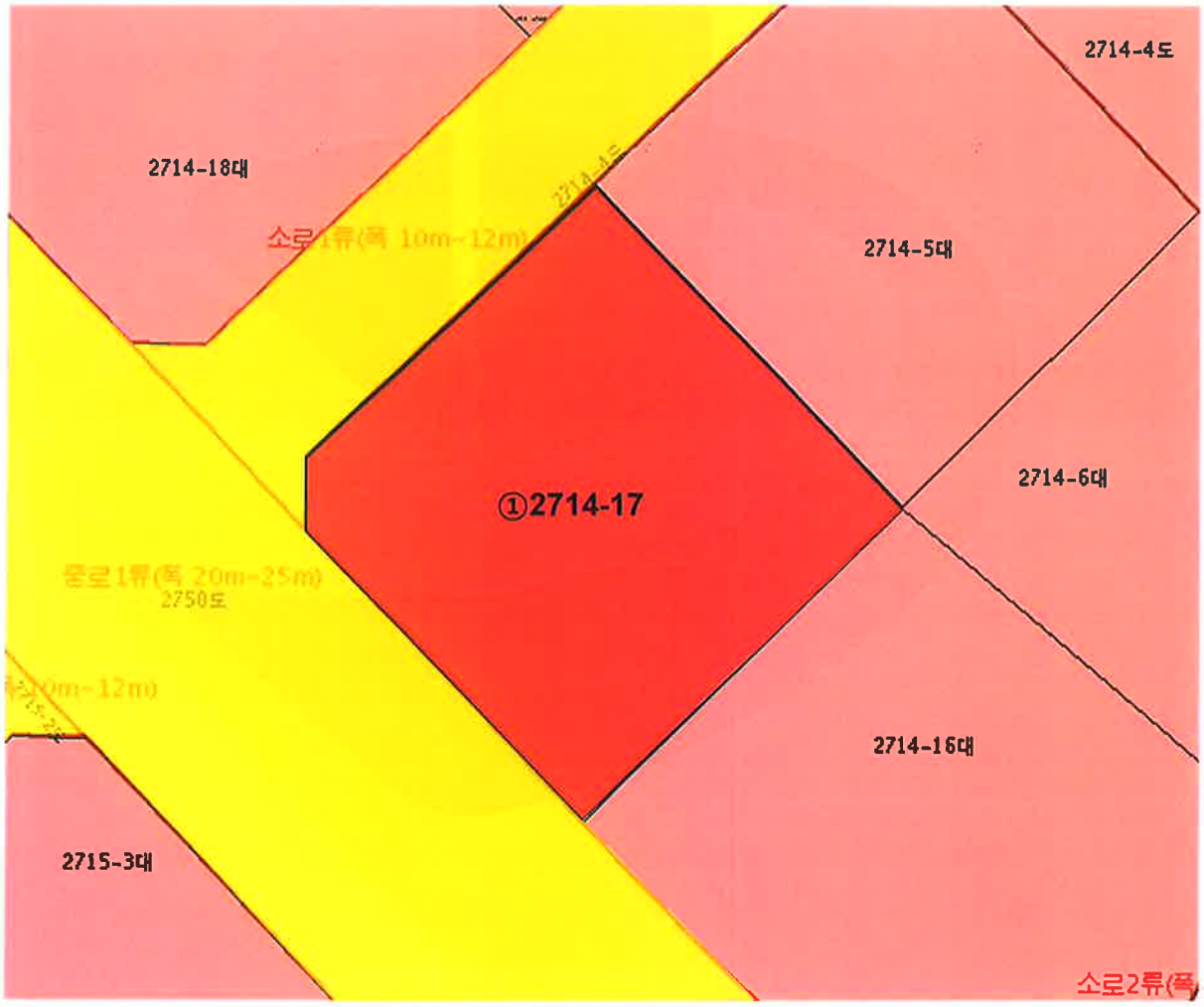

범 례			
	평 가 대 상 토 지	용도지역구분선	평가건물3층이상
	도 로	평 가 건 물 1 층	평 가 제 외 건 물
	도 시 계 획 선	평 가 건 물 2 층	제 시 외 건 물

대일감정원
Daeil Appraisal Board

사 진 용 지



[본건 전경]



[본건 전경]

사 진 용 지



[본건 전경]



[본건 인근]

공정한 감정평가! 고객감동의 경영!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수　　신　광주문화신용협동조합이사장

참　　조　--

제　　목　감정평가 의뢰에 대한 회보

---

1. 귀 조합의 발전을 기원하오며 항상 우리 법인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2025.10.23.자로 의뢰하신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14-17 소재 "토지"』 건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감정평가하여 회보 합니다.

3. 우리 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의거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오니 필요사항(사업자등록증 사본, 담당자명, 유·무선 전화번호, 이메일)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감정평가서 2부
　　2. 청 구 서 1부. 끝.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광 주 전 남 지 사 장　추 민 수

시행 문서번호 : DD254-102303 (시행일자 : 2025. 10. 28.)
우 61504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523, 2층(용산동) / www.idab.co.kr
전화 (062)385-3100 / 전송 (062)385-3105

청 구 서

감정평가서번호 : DD254-102303

광주문화신용협동조합이사장 귀하

아래의 평가보수를「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334호, 2025.03.17)에 의거 청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평 가 보 수 : ₩4,268,000.-(부가세포함)

2. 평가보수산출내역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평가수수료	일반	3,566,000+(297,214,000×7/10,000×0.8)	3,732,439
	할증		-
	평가수수료 계		3,732,439
실비	여비	경상남도 양산시	142,200
	물건조사비		-
	공부발급비	토지이용(1,000), 등기사항(1,000)	2,000
	기타실비	사진 4장 × @1,000	4,000
	실비 계		148,200
평가보수 계(공급가액)		천원미만 절사	3,880,000
부가가치세(세액)		10%	388,000
합 계			4,268,000
착 수 금			-
청 구 금 액			4,268,000

※ 수수료 입금시 입금자 명의를 감정서번호(DD254-102303)로 기재하여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결 제 계 좌 : 신용협동조합 131-022-586994, 예금주 : (주)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4. 사업자등록번호 : 408-85-12653

2025년 10월 28일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광 주 전 남 지 사 장 추 민 수

TEL : (062)385-3100 FAX : (062)385-3105

대일감정원
Daeil Appraisal Board